

중세 몽골의 칭기스칸 법전 연구

한상돈*

목 차

- I. 머리말
- II. 대자사크의 복원과 法源
 - 1. 實存 논쟁
 - 2. 대자사크의 재구성
 - 3. 주요 법원
- III. 대자사크의 중점 규범
 - 1. 십진제 조직과 首長の 임무
 - 2. 수렵과 군사훈련
 - 3. 군사력 관련규범
 - 4. 백성의 의무규정
- V. 맺음말

[국문 요약]

12세기 말부터 테무진은 부족을 통합하기 시작하여 13세기 초에는 몽골을 통일하고 칭기스칸으로 즉위한다. 이 때 ‘칭기스칸 法典’을 반포하는데, 현존하지 않는다. 일부 서양학자들은 史料에 흩어져있는 법률 條文들을 모아 법전을 복원하였다. 중국은 2007년에 65개 조문을 모아 ‘칭기스칸 법전’을 재구성을 한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칭기스칸 법전’ 중에서 軍事에 관련된 법조문을 고찰해 보면, 몽골인들의 전통적인 ‘요순(yuson)’과 관습법이 칭기스칸 법전의 주요 法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몽골제국의 군대조직은 사회조직이기도 하였는데 十進制를 실시하였다. 十夫, 百夫, 千夫, 萬夫로 조직하였고, 책임자에게는 큰 권한을 부여하였다. 몽골인들은 평상시에는 사냥을 하였는데, 군사훈련하는 것처럼 하였다. 사냥의 목표물을 놓치면 법에 의해 지휘관을 처벌하였다. 적군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공격하지 않았다. 특정한 장소로 집결할 때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각 개인은 노소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참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이러한 군사관련 법규범이 몽골제국을 강력하게 하였다. 칭기스칸 법전의 法典체제나 입법기술은 빈약하지만, 그 법규

* 이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학박사; sdhan@ajou.ac.kr

범은 매우 실제적이고 실용적이었다. 군사관련 법규범이 결국은 거대한 영토를 정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주제어] 몽골제국, 유목사회, 칭기스칸, 법전, 자사크, 요순

I. 머리말

고대 몽골부족이 살았던 지역은 자연조건이 매우 열악하였다. 몇 년마다 한번씩 찾아오는 가뭄이라도 드는 날에는 물이 메말라 초목은 피폐해지고 가축들은 폐사하곤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그들은 생존을 위하여 나뉠대로의 생활방식을 갖게 되었고, 강인한 생명력을 갖게 되었다.

테무진(1162~1227)이 살았던 12세기 시대의 몽골인들은 수많은 ‘울루스(ulus)’로 나뉘어 살았다. 이 울루스는 부족인 동시에 작은 나라를 뜻한다.¹⁾ 몽골인들은 어려서부터 걸음마보다는 말타기를 먼저 배운다고 한다. 테무진도 말을 타고 활을 쏘며 북아시아의 거친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 그 당시에는 부족과 부족끼리 서로 침략하는 경우가 많아서 남보다 강해야 정복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체득하며 성장하였을 것이다.

수많은 역경을 거치면서 테무진은 투르크 몽골 등 주변의 여러 부족들을 하나 하나 복속시켰다. 자신이 속한 울루스를 점차 확대해 나아가 결국 몽골을 하나의 국가로 통일시켰다. 1206년 오늘날의 외몽골 지방에 있던 유목민들은 部族聯盟會議인 ‘쿠릴타이’²⁾를 열어 테무진을 칸(Khan)으로 추대하였다. 테무진은 대몽골국의 칭기스칸(Genghis Khan)으로 즉위하였고, <예케

1) 르네 그루세(Rene Grousset)지음, 김호동·유원수·정재훈 옮김, 『유라시아 유목제국사』(사계절출판사, 2003), 287면. ‘울루스’의 실제 발음을 몽골인에게 알아 본 결과 ‘월스’로 발음하였다. 중세 몽골어 학자들 사이에는 당시 표기법을 따르는 원칙이 준수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이를 따라 고대 몽골어로 표기한다.

2) 러시아 사전을 찾아보면, 쿠릴타이가 “몽고 혹은 터키의 여러 민족의 집회. 동방 소비에트의 여러 공화국 창설 당시의 국가 최고 기관”으로 설명되는 것을 보면, 몽골족의 전통적인 쿠릴타이가 주변 국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중세 몽골에서는 부족들의 최고의결기관으로써 칸의 추대, 군대 出征 등의 국가대사를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자사크(yeke Jasaq)》를 반포하였다.³⁾ 칭기스칸이 반포한 ‘예케 자사크’는 ‘大法典(Great Jasaq)’이라고도 불리는데, 실제로 조사·정리된 법조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칭기스칸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칭기스칸 법전’을 반포하기 이전의 몽골사회는 성문법도 없고 정부도 없는 그야말로 전통적인 관습법이 각 부락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었다.⁴⁾ 대자사크가 몽골사회의 주요 법규범으로 자리잡아 가면서 혼란했던 정세가 안정되고, 몽골제국은 점차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12세기 말의 동아시아의 정세를 보면, 남쪽에는 항주를 수도로 했던 漢族의 南宋, 북쪽에는 북경을 수도로 했던 女眞族의 金나라가 있었다. 오늘날의 오르도스주와 간수성[甘肅省]이 있는 서북지방에는 탕구트족의 西夏 왕국이 있었다.⁵⁾ 칭기스칸과 그의 자손들은 주변국인 금, 서하를 멸망시키고 계속 세력을 확대하여 중앙아시아 각국, 아라비아, 터키 등을 굴복시켰다. 또한 오늘날의 러시아를 정복하여 대몽골국은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진 거대한 영토를 통치하게 되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칭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는 1271년 북중국에 元나라를 세우고, 1279년에는 남송마저 멸망시켜 중국 전역을 지배하였다. 이렇게 해서 대몽골국은 인류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제국이 되었다.

중세 몽골의 不可思議한 이러한 엄청난 국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당시 인구가 100만명에서 250만명 정도였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인구로 어떻게 거의 지구 육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그 당시 몽골족을 규범하였던 칭기스칸의 ‘예케 자사크’를 주목하였다. 선행 연구자들은 주로 遺失된 원본을 복원하는데 주력하였다. 본고는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복원에 관련된 문제와 그 주요 法源을 살펴보고, 대자사크에서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분석함으로써 몽골제국이 세계정복을 할 수 있었던 근본역량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3) 참고, 武志忠主編, 『〈成吉思汗法典〉及原論』 商務印書館(內蒙古典章法學與社會學研究所, 2007), 15면. 르네 그루세(Rene Grousset)지음, 김호동·유원수·정재훈 옮김, 앞의 책, 319면.

4) 참조, 包朝魯門, 『蒙古族古代獨特刑罰制—罰畜刑研究』, 『碩士學位論文』(內蒙古大學, 2012.5), 4면.

5) 르네 그루세(Rene Grousset)지음, 김호동·유원수·정재훈 옮김, 앞의 책, 281면.

II. 대자사크의 복원과 法源

1. 實存 논쟁

‘대자사크’ 즉 ‘칭기스칸 법전’은 오늘날까지 그 원본이 발견되지 않아 무슨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대자사크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법전으로서 존재한다는 견해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예컨대, 러시아의 바실리에프(Vasiliev)와 포포프(Popov)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⁶⁾ 바실리에프에 의하면 자사크는 법의 집대성이 아니라 칭기스칸의 格言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한다. 포포프는 만약 자사크가 存在한다면 元나라의 입법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1320년에 반포된 원나라의 법전중에서 칭기스칸의 대자사크를 준용한 곳은 불과 세 군데에 지나지 않는다면 법전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러나 주베이니(Djuveini)는 1260년에 간행된 그의 저서 <세계정복의 역사(History of the World Conquerors)에서 “아사크는 종이에 기록되어 중요 왕궁의 비밀창고에 보존되었다. 특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 종이조각은 운반되어져 이를 토대로 사건이 재결되었다”⁷⁾고 하면서 實存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라시드 에딘(Rashid Ed-din)의 기록(1318)을 보면, 칭기스칸이 왕칸(Wang khan, 王罕)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1206년에 “대집회를 소집하고, 그의 대성공에 대한 하늘의 도움에 감사하기 위해 현명하고 확고한 자사크(Yassk)를 제정하고 위풍당당하게 칸의 자리에 올랐다”⁸⁾고 하면서, 대자사크가 존재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6) 참고 V.A.라자노프스키 지음, 서병국 옮김, 『몽골의 관습과 법(Fundamental Principles of Mongol Law)』(도서출판 혜안, 1996), 42면.

7) V.A.라자노프스키 지음, 서병국 옮김, 위의 책, 43면.

8) 라시드 에딘은 페르시아의 훌라기드(Hulagid)왕조(칭기스칸 직계) 시대에 재상으로 있으면서 가자칸(Ghazan khan)으로부터 몽골사를 쓰라는 칙명을 받고 많은公私 자료와 口碑를 이용했다. 그는 당시까지 신중하게 구전으로 전해져 오던 칭기스칸의 빌리크(bilig: 격언)와 명령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 내용을 상세히 번역했는데, 위와같은 기록을 그의 저서 ‘History of the Jenghis Khan’에 남긴 것이다. 참조 V.A.라자노프스키 지음, 서병국 옮김, 위의 책, 44면.

이와 같이 주로 두가지 견해가 대립되지만, 자사크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법전으로 존재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⁹⁾ 1937년 <몽골의 관습과 법(Fundamental Principles of Mongol Law)>을 저술한 V.A.라자노프스키 역시 “법령집의 반포 결의가 1206년에 채택되었고, 그 기본적 규칙이 1218년의 쿠릴타이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하며, 칭기스칸의 자사크는 법전이 지 구전되는 훈령을 모아놓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¹⁰⁾ 중국의 학자들은 대부분이 實存하였다는 說을 따르고 있는데, 주로 史料의 기록에 근거를 두고 있다. <몽골비사>에 의하면 ‘칭기스칸 자사크’는 ‘청책(靑冊, Köbö Debter)’에 적었다는 기록이 보이며, 현재 몽골사학계의 대부분 학자들은 모두 ‘청책’에 기록된 것이 ‘칭기스칸 자사크’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있다¹¹⁾고 하면서 실존설을 취하고 있다. 여러 역사문헌에 존재하였음을 느끼게 하는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보면, 칭기스칸 대자사크는 법전으로서 실존하였었다고 보여진다.

2. 대자사크의 재구성

칭기스칸의 대자사크 즉 ‘칭기스칸 법전’은 그의 재위시에는 행위규범으로써 절대적인 권위를 지녔다.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도 반드시 자사크를 자자손손 지키도록 遺訓을 내렸기 때문에 그 권위는 존속되었다. 칭기스칸의 셋

-
- 9) 러시아의 어느 한 학자는 자사크가 국제법, 공법, 형법, 私法, 상법, 司法으로 구성되었다고 밝혔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 奇格, 『试述古代蒙古的法制及其主要特点』, 『内蒙古社会科学』 第2期(1994), 56면. 다른 한 견해에 따르면, 테무진이 칭기스칸으로 즉위하는 1206년 전후로 편찬되었고, 1227년 그의 사망과 더불어 중단(closed)되었다고 한다. 참조, Igor de Rachewiltz, “Some Reflections on Cinggis Qan’s Jasy”, *East Asian History* 6(Institute of Advanced Studie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93), p.102.
- 10) V.A.라자노프스키 지음, 서병국 옮김, 앞의 책, 49면. V.A.라자노프스키는 또한 건륭제 초기에 공간된 중국 서적 『續文獻通考』에는 “元の 태조(칭기스칸)가 중요한 범죄만을 사형에 처하고 다른 것은 사정에 따라 태형을 부과했다”라는 기록이 나온다(續文獻通考 卷135, 28면)고 소개하면서, 이것은 예로부터 중국인들이 칭기스칸의 대자사크가 반포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참조, V.A.라자노프스키 지음, 서병국 옮김, 앞의 책, 47면.
- 11) 참조 奇格, 앞의 책, 56면; 王平原, 『“扎撒”、〈大扎撒〉辨析』, 『山东警察学院学报』 总第91期(山东警察学院, 2007.1), 28면; 赖秀兰, 『成吉思汗〈大扎撒〉中生态探析』, 『安徽农业科学』 36卷28期(2008), 15~16면.

째 아들인 오고타이에 의해서, 대자사크의 절대적 권위는 그대로 계승되었고 여전히 유효하였다.¹²⁾ 원나라(1271~1368) 시대에도 칭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는 자사크를 ‘祖訓’이라고 칭하고,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함부로 고치지 못하게 하였다.

〈史集〉에 의하면, 중세 몽골에서 최초로 자사크가 편찬된 것은 1203년이다. 그 후 1206년에 칭기스칸이 대칸으로 즉위하면서 자사크를 선포한다. 이 자사크는 1219년, 1225년에 새로운 명령, 훈언, 규칙 등이 보완되어 새롭게 편찬되었다.¹³⁾ 대자사크가 칭기스칸이 죽은 후에도 새롭게 정비되면서 그 권위가 지속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대자사크에 관련된 기록들은 칭기스칸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드넓은 영토를 정복한 것만큼이나 많은 나라에 산재해 있다. 각 지역의 사학자들은 자사크의 흔적을 찾아내어 재구성해보는 작업을 하였다. 예를 들자면 고대 아라비아, 페르시아, 아르메니아의 역사가들인 마크리지(Makrizi), 미르혼드(Mirhond), 이븐 바투타(Ibn Batuta), 바르탕(Vartang), 마하키아(Mahakia) 등은 자사크의 기록들을 모아서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¹⁴⁾ 또한 ‘쁘디 드 라 크로아(Ptis de la Croix)’는 페르시아의 역사가들, 프라 루브루키, 프라 카피니 등이 남긴 기록들을 발췌하여 22개 조문의 자사크를 재구성하기도 하였다.¹⁵⁾ 22개 조문 중에서 군대와 관련된 것으로는 군대조직, 무기검열, 약탈금지, 戰士의 훈련을 위한 狩獵 등 4개 조문이다.

그런가 하면, 라자노프스키(Nicholas Valentine Riasanovsky)는 〈몽골관습법 연구〉에서 칭기스칸의 ‘자사크’ 26개조를 게재하였는데, 그 중 대부분이 이집트의 역사가 마크리지(Makrizi)가 번역한 〈아라비아 고문 선집〉

12) 王平原, 위의 책, 29면.

13) 학자에 따라서는 1202년 칭기스칸이 타타얼 부족을 정복할 때 군령들을 반포하였는데, 이것이 곧 첫 번째 자사크 이고, 1204년 나이만 부족을 정복할 때 반포한 것이 두 번째 자사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참조 包朝魯門, 앞의 책, 4면. 그러나 1203년에 첫 번째 자사크가 반포되었다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참조 黃華均 著, 『蒙古族草原法的文化闡釋—衛拉特法典及衛拉特法的研究』(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6), 51~53면; 王紅蕾, 『試論成吉思汗的法律思想』, 『西北史地』 第1期(1995), 62면; 吳海航, 『成吉思汗〈大扎撒〉探析』, 『法學研究』 第5期(1999), 138~139면.

14) V.A.라자노프스키 지음, 서병국 옮김, 앞의 책, 42면.

15) 참조, 해럴드 램 지음, 강영규 옮김, 『칭기즈칸』(현실과 미래, 1998), 240면.

제2권의 기록과 모로코 여행가 이반·바투타, 페르시아의 역사가 라시터 등의 기록을 참고하여 위와같은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¹⁶⁾ 중아시아, 서아시아 심지어 이집트의 학자들과 러시아 학자들도 ‘칭기스칸 법전’을 연구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마크리지(Makrizi)가 발표한 36개 조문의 대자사크가 잘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도 몇몇 학자들이 흠어진 단편들을 모아 대자사크를 재구성했다는 기록이 있다.¹⁷⁾ 2007년 7월에는 ‘內蒙古典章法學與社會學研究所’가 국가연구용역인 ‘蒙古民族法制史’를 수행하면서 그 일부로써 칭기스칸 대자사크 65개 조문을 재구성하였다. 그 구조를 보면 크게 총칙, 각칙, 부칙 등 세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각 법조문 수는 총칙 17개 조문, 각칙 46개 조문, 부칙 2개 조문이 있다. 총칙은 기본법 2개 조문,¹⁸⁾ 국가제도 6개 조문, 사회관리 2개 조문, 役稅 3개 조문, 驛站 4개 조문 등으로 배열되어 있다. 각칙은 군사법 24개 조문, 행위법 19개 조문 소송법 3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군사법 관련조문은 모두 24개로서 전체의 37%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제일 큰 것이 주목된다.

‘내몽고전장법학과 사회학연구소’에 의해 재구성된 칭기스칸 대자사크 65개 조문은 8가지 문자로 된 1,200여편의 사료들을 찾아내어 그것을 읽고 정리하는 연구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것이다.¹⁹⁾ 연구 성과물은〈成吉思汗法典及原論〉으로 출판되었다. 그 책의 서문을 보면, 대자사크를 복원하기 위해 학

16) 吳海航, 앞의 책, 140면.

17) 예컨대 吳海航의 36조문, 奇哥의 174조문 등을 발표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자료수집은 하질 못했다.

18) 기본법은 두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칭기스칸 대자사크의 본질, 기본 원칙과 효력 등 기본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1조는 “하늘은 칭기스칸에게 자사크를 내려 주셨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여 대자사크의 권위가 天命에 근거하고 있음을 선언하였다. 제2조는 중세 몽골사회의 각종 인간관계 즉 부모와 자식, 형제지간, 부부관계, 長幼관계 官民관계 등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19) 연구자들이 주로 참고한 문헌으로는 〈史集〉, 〈世界征服者史〉, 〈多桑蒙古史〉, 〈蒙轡備錄〉, 〈黑韃事略〉, 〈聖武親征錄〉, 〈新居留地和古迹中的教訓和殷鑑〉, 〈埃及志〉, 〈蒙古秘史〉, 〈蒙古民族通史〉, 〈蒙古帝國史〉, 〈蒙古與羅馬教廷〉, 〈馬可·波羅行紀〉, 〈成吉思汗〉, 〈柏朗嘉賓行紀〉, 〈魯布魯克東行紀〉, 〈古代蒙古法制史〉, 〈元史〉, 〈中國古代驛前與郵傳〉, 〈遼史〉, 〈聖武親征錄〉, 〈蒙古黃金史綱〉 등이 있다. 武志忠主編, 앞의 책, 서문; 王冬梅, 『〈成吉思汗法典〉與草原文化』, 『思想工作』第 11~12期(2007), 29면.

자 두사람이 7년 동안 기초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후에 열명의 학자가 1년 동안 공동연구를 추진하였다. 지금까지 칭기스칸 법전을 재구성한 것 중에서는 비교적 더 나은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법전의 실체에 관해서는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3. 주요 법원

1) 자사크의 형성과 존재형식

‘칭기스칸 법전’이 반포되기 전에도 몽골사회를 규범하는 자사크가 있었다. 몽골문자가 없었을 때는 不文 형식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사크는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곧 불문으로 된 자사크와 成文으로 된 자사크이다.²⁰⁾ 1204년 무렵부터 위그르 계통의 문자를 몽골인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자사크는 성문 형식으로 존재했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1206년에 반포된 ‘칭기스칸 법전’은 대몽골국의 근본대법이며, 몽골 최초의 성문법전이다.²¹⁾

‘자사크’의 의미는 ‘法度’, ‘軍令’, ‘法典’ 등 다양하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강제력이 있다. 자사크는 주로 중세 몽골인의 고유한 관습인 ‘요순(yusun)’, 관습법 등으로 이루어졌다. 칭기스칸은 즉위한 후에 여러 가지 명령, 訓言, 법령을 내렸는데,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자사크에 반영되었다. 다시말하면 요순, 관습법, 칭기스칸의 명령과 訓言, 법령 등이 法源이 되어 대자사크 즉 법전으로 편찬된 것이다. 여기서 訓言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하면, 칭기스칸은 어려서부터 전투상황에 익숙한 바탕 위에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풍부한 慧智를 터득하였다. 그의 이러한 혜지는 전쟁에 관한 많은 ‘訓言’으로 나타났다. 훈언은 강제력이 있고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었다. 訓言도 요순, 관습법과 더불어 法制化되어 대자사크에 조문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20) 黃華均 著, 앞의 책, 82면.

21) 奇格, 앞의 책, 56면. 黃華均 著, 앞의 책, 89면.

대자사크의 이와같은 편찬방식은 후세에도 계승되었다. 예컨대 〈大元通制〉, 〈至正條格〉 등 元나라의 법전은 대자사크와 같이 여러 가지 法源들을 집대성하는 방식으로 편찬된 것이다.²²⁾ 따라서 칭기스칸 대자사크의 입법방식은 몽골족의 독특한 법전 편찬방식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요순’과 관습법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순(yusun)과 관습법은 대자사크의 주요 法源이다. 요순은 보통 관습법이라도 일컬어지는데, 정확히는 관습법 이전단계의 ‘관습’으로서 마치 중국 고대사회에서 ‘出禮則刑’ 즉 禮에서 벗어나면 법으로 다스렸던 것과 같은 法의 발전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요순(yusun)은 ‘理致’, ‘道理’, ‘規則’ 등의 함의가 있는데,²³⁾ 몽골 관습법의 淵源이 되기도 한다.

몽골의 요순은 몽골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지켜야하는 규범력이 있었고 사회가 進化하면서 점차 法의 강제성을 띠기 시작했다. 고유의 문자가 없었던 시기에는 당연히 요순은 口傳되었을 것이지만, 문자를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점차 成文化 되었고²⁴⁾ 또한 자사크의 法源이 되었다.

농경사회에 익숙해진 시각에서 볼 때, 유목사회에서 생성된 요순은 나름대로 독특한 특색이 있다. 요순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방면에서 緣由하였다.

첫째는 조상으로부터 전해내려 온 자연과 관련된 禁忌이다. 봄과 여름에는 어떠한 사람도 대낮에 물속에 앉아있으면 안되었고, 천둥이 칠 때 강가에서 빨래를 할 수 없었다. 젖은 옷을 초원에 펼쳐놓으면 안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천둥번개가 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²⁵⁾ 손을 물속에 집어넣

22) 田莉姝, 「论元朝法制的民族特色」, 『贵州民族研究』第22卷总第89期(2002), 143면. 李玉年, 「〈大扎撒〉对元朝立法的影响及其在中华法系中的地位」, 『史林』(2007.3), 84면.

23) 참고, 王平原, 앞의 책, 26면; 牛文军, 「近年来蒙古民族地方法制史研究述评」, 『内蒙古大学学报』第32卷第5期(内蒙古大学, 2000.9), 18면.

24) 口傳되던 ‘요순’은 1204년무렵 위구르식 몽골문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점차 成文形式을 띄게 되었다. 黄华均, 「蒙古族‘约孙’的生态价值诠释—基于低碳和绿色发展的法理思考」, 『新疆大学学报』第38卷第4期(新疆大学, 2010.7), 66~67면.

25) 참조, 吴海航, 「‘约孙’论—蒙古法渊源考之一」, 『中外法学』总第57期(1998), 72~73면. 실제로 쁘띠드 라 크로아(Ptis de la Croix)가 재구성한 자사크의 제20조는 ‘천둥이 칠 때 강가에서 빨래하는

는 것을 금했으며, 물을 퍼 담을 때는 반드시 용기를 사용하여야 했다. 물이나 재에 방뇨해서도 안되었다. 불 위를 넘거나 뽀족한 무기로 불을 푼 짓는 것은 금지되었다.

둘째는 몽골사회의 전통관념에서 비롯된 요순이 있다. 전통관념은 대부분 몽골족의 원시종교인 샤먼(Shaman)으로 인해 형성되었고, 몽골인의 독특한 자연관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 샤먼교의 자연신 체계에서는 天神과 地神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만물은 서로 상관되고 만물은 모두 신성하다고 본다. 산천·호수·초목 등은 모두 각자의 신령이 관장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초원에 풀이 푸르게 나있는데, 구멍을 파서 초원을 손상시키는 것은 금지되었다. 또 방화로 초원이 불타게 해서도 안되었다.²⁶⁾ 차려진 음식상을 넘어서도 안되었고, 천막의 문지방을 밟고 있어도 안되었다.

셋째는 수렵에서 생성된 요순이 있다. 중세 몽골인은 원래 수렵이 日常事일 정도로 생존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여러 가지 동물들을 사냥하면서 그 동물들의 습성에 따른 여러 사냥 방법들도 터득하였다. 그러나 모든 동물들을 포획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새끼를 배거나 새끼를 거느린 어미짐승이나 어린 짐승은 어떠한 동물이더라도 포획을 금하였다.²⁷⁾ 짐승이 고통스럽게 죽게해서는 안되었다. 짐승을 함부로 도살해서도 안되었다. 만약 어린 동물들을 포획하면 무능하고 비겁한 남자로 간주되었고, 짐승을 함부로 도살하면 그같이 도살하도록 하였다.

요순은 점차 세월이 흐름에 따라 관습법으로 발전하였다. 몽골법제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몽골민족의 관습법 시기는 기원 8세기말 혹은 9세기 초에 시작하였으며, 12세기 후반에 그쳐 약 4백년으로 여기고 있다.²⁸⁾ 요순은 대몽골국이 건국된 이후에 몽골 입법에 주요 法源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몽골초원에서는 이러한 요순의 흔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6) 2007년 중국에서 재구성한 대자사크 56조는 “초원을 보호한다. 초원이 푸르른 후에 구멍을 파서 초원이 손상되는 경우, 방화로 초원이 불 탄 경우에는 전 가족에게 사형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7) 참고 赖秀兰, 앞의 책, 34~35면; 黄华均, 앞의 책, 67면.

28) 牛文军, 앞의 책, 18면.

다.²⁹⁾ 요순은 몽골의 여러 부족에서 광범위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다. 칭기스칸의 대자사크는 이러한 문제를 성문법 형식으로 흡수하여 해결하였다.³⁰⁾ 쿠릴타이 같은 제도 역시 원래는 요순으로 비롯된 것인데, 후에 이를 법제화 하여 몽골의 최고의결기구가 되었던 것이다.

Ⅲ. 대자사크의 중점 규범

재구성된 대자사크를 보면 대체로 군사에 관한 것이 중점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2007년 중국에서 복원한 칭기스칸 대자사크 역시 군사법에 중점을 두었다. 그것은 대몽골국이 건국되기 전부터 수많은 전쟁을 겪어야 했으므로 전쟁이 유목민족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³¹⁾, 그런 가운데 생성된 규율이 법제화 되어 자연히 대자사크의 중점 법규범으로 진화한 것이다.

중국에서 복원한 대자사크는 군사에 관련된 조문들을 ‘군사법’으로 한 데 모았다. 그리고 수렵, 전쟁, 호위 세부분으로 다시 세분하였다.³²⁾ 이 중 몽골군의 전투력과 관련이 깊은 것은 ‘수렵’과 ‘전쟁’에 관련된 조문들이라 할 수 있다.

29) 阿茹罕, 「试论〈成吉思汗〉的刑法规定及其意义」, 『内蒙古农业大学学报』第6期第11卷, 总第48(内蒙古农业大学, 2009), 30면. ‘yoson’과 ‘great jasaq’ 관해서는 Denise Aigle, “The great jasaq of Gengis Khan, the empire, Mongol culture and Sharia”,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Vol.47, No.1(2004), pp.31~79 참조.

30) 참조. 武志忠主編, 앞의 책, 19~20면.

31) 黃華均 著, 앞의 책, 100면.

32) 군사법 24개 조문 중에서 수렵에 관한 것은 4개 조문, 전쟁에 관한 것은 13개 조문, 호위군에 관한 것은 7개 조문이다.

1. 십진제 조직과 首長의 임무

1) 십진제 조직

몽골제국의 군대조직은 사회조직이기도 하였는데 十進制를 실시하였다. 대자사크 제23조에 의하면³³⁾ 군대편제는 십진제로 조직하도록 하였고 십진법을 단위로 하여 십부, 백부, 천부, 만부로 하였다. 몽골제국이 건국되기 전에는 칭기스칸이 각 조직의 長을 임명하였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아래서 위로 추천하는 선거제로 바뀌었다.³⁴⁾ 즉 十人이 그들 중에서 십부장을 추천하고, 십부장들이 백부장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백부장부터 천부장, 만부장은 대칸이 직접 임명하고 그들은 몽골의 지배계층인 ‘노얀’이 되었다. 이러한 십진제 조직으로 인하여 몽골사회는 조직의 힘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중세 몽골사회에서는 노예계급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노예는 ‘戶’로 계산되지 않고 주인에게 부속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군사작전시에는 하나의 夫로 편제되었고³⁵⁾ 출신성분의 귀천을 가리지않고 功勳에 따라 포상하거나 진급시켰으므로, 전투는 노예들에게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것 또한 몽골군이 강력한 전투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2) 수장의 임무

각 조직의 首長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했다. 그 요건은 행군할 때 군대를 시장하게 하지 않고 가축을 배고프게 하지 않도록 한 자이어야 했다.(제24조) 전투에 임할 때에 제 때에 식사하는 것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허기지거나 배고픈 군인은 싸움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군인이나 가축을 잘 돌볼 수 있는 능력 여부가 조직의 首長이 되는

33) 참조, “군대 편제는 십진제를 실행한다. 귀족, 노예를 포함하여 십부, 백부, 천부와 만부로 나눈다. 십인이 十夫長을 추천하고, 십부장이 百夫長을 추천하고, 백부장이 千夫長을 추천한다.” <칭기스칸 대자사크 제23조>.

34) 武志忠主編, 앞의 책, 105면.

35) 참조, 武志忠主編, 앞의 책, 106면.

관건이었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을 잘 돌보는 풍토가 조성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로 하층민의 전투의욕을 증진시켰고, 이는 곧 막강한 전투력의 향상으로 연결되었다.

몽골군대가 전투력을 막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엄벌에 처하는 규정이 있었던 것도 한 몫을 하였다. 기초조직의 수장이 되는 십부장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그 職을 박탈하였다. 동시에 그의 처자식도 연좌 처벌하였다.(제25조) 그리고 곧바로 십부장을 새로운 사람으로 선출하였다.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역시 자신의 임무를 다 하지 못했을 경우는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처자식들이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은 자신이 맡은 임무를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였으니, 그 조직 내부에 응집된 힘은 어마어마했던 것이다.

백부장 이상의 수장은 군사회의에 참석하여 칭기스칸의 訓言을 듣고 이를 관할 軍士들에게 전달하여 준수하도록 해야 했다.(제26조) 십부장은 군사회의 참석에 제외가 되었는데, 오늘날로 치면 십부장까지는 ‘지휘자’이고 백부장부터는 ‘지휘관’으로 구분하였을 듯 싶다. 실제로 몽골사회에서는 백호(ja'un), 천호(mingghan), 만호(tumen)의 首長들은 귀족인 노안(noyan)으로 될 수 있었다.³⁶⁾ 군사회의에서 하달된 지시 혹은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그 직책에서 물러나야 했으므로, 모든 휘하 군대의 구성원들은 늘 지휘주목을 해야만 했다. 각급 조직 上下간의 지시 혹은 명령에 대한 절대복종과 충성으로 최고지휘관의 意志가 全軍에 확실하게 전달되는 시스템을 갖췄던 것이다.

2. 수렵과 군사훈련

1) 수렵의 지휘

수렵을 1년 내내 했던 것은 아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가능했다. 주로 매년 겨울 첫눈이 오는 때부터 시작하여 이듬해 봄철에 푸른 풀이 나올 때가

36) 르네 그루세(Rene Grousset)지음, 김호동·유원수·정재훈 옮김, 앞의 책, 328면.

지 몽골족은 대규모의 수렵을 했다.³⁷⁾ 이것은 곧 겨울 양식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수렵을 통한 군사훈련이 되기도 한 것이다.

몽골인들은 평상시에 사냥을 할 때, 마치 전투를 하는 것처럼 지휘체계를 갖추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대자사크 제19조는 “수렵시에는 戰時組織에 따라 움직이며, 지휘관을 세우고 지휘관이 수렵을 일괄적으로 지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짐승들을 포위 사냥할 때는 일사불란한 전술이 필요하다. 공격 전에 척후병이 먼저 적진을 정탐하는 것처럼, 포위 사냥을 할 때는 먼저 포획할 짐승들이 어디에 어떠한 형태로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작전계획이 수립되고, 지휘자의 명령이 하달되면 이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말을 타고 짐승들을 몰아가고, 준비된 궁수들은 활을 당겨 짐승을 포획하는 장면은 실제로 전쟁터에서 적군을 섬멸시키는 과정과 일치한다. 이러한 포위 사냥 활동은 군사훈련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몽골군대가 영토를 정복해 나갈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2) 수렵의 군사훈련화

중세 몽골인들은 초원의 유목부족이 아니면 삼림의 수렵부족이었다. 삼림에서 사는 부족들은 한겨울에 담비와 시베리아 다람쥐를 사냥하였고, 초원에 사는 유목민들은 올가미나 활을 들고 영양과 사슴을 사냥하였다.³⁸⁾ 몽골인들은 어려서부터 사냥을 하면서 자라났고 사냥은 그들의 일상생활이 되었다. 칭기스칸은 사냥을 전투와 연결시켜 이를 군사훈련화 하였다. 대자사크 제18조는 “대몽골국은 수렵을 기초로 하는 군사훈련체도를 수립한다”라고 하여 사냥을 통해 젊은이들을 군사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수렵을 군사훈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수렵을 하다가 표적동물을 놓치는 경우는 꼭 실패책임을 져야 했다. 대자사크 제20조를 보면 수렵을 하다가 야

37) 몽골인들은 매년 3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사냥을 금하여 동물들이 번식하도록 하였다. 대규모의 포위사냥 활동은 일반적으로 초겨울에 시작되었다. 참조, 武志忠主編, 앞의 책, 96면.

38) 참조, 르네 그루쎈(Rene Grousset)지음, 김호동·유원수·정재훈 옮김, 앞의 책, 289~290면.

생동물을 놓치는 경우, 그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여 지휘관에게 杖刑에 처하고 심지어 死刑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을 보면 몽골인들에게 있어서 사냥은 단순히 식량을 구하는 활동이 아니라 전투 이상의 의미가 있는 군사작전이었던 것이다. 수렵에서의 失手나 過誤를 조금도 용서하지 않는 엄벌규정을 떠올리며, 몽골의 지휘관들은 마치 實戰을 치루는 것처럼 수렵을 지휘하였을 것이다. 또한 軍士들은 이와 같은 엄정한 규율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자신의 맡은 임무를 수행해야만 했다. 이러한 사냥이 반복될 때 마다 병사들의 전투기량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을 것이다.

3. 군사력 관련규범

1) 事前 제압과 작전규범

칭기스칸은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꾀하였다.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전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적을 사전에 제압하는 방법을 취하곤 하였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선전포고를 해서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다. 몽골군대는 적과 교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먼저 선전포고를 하였다. 대자사크 제22조는 만약 순복한다면 善待하고 인성을 보장하지만, 그렇지않고 對抗한다면 그 결과는 天神만이 알 뿐이라고 겁박하였다. 이러한 지침은 實戰에서 지켜졌는데, 실제로 몽골군은 항복한 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였지만, 맞서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살육하였다.

몽골군은 작전시에는 매우 신중하였다. 칭기스칸의 몽골군이 連戰連勝할 수 있었던 것은 적군의 정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出擊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자사크 제31조는 “軍士는 유사시 신중하여야 하며, 적군의 정황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경솔하게 적을 향해 출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⁹⁾ 이러한 규율로 인해 작전은 늘 신중하게 검토되었다. 적군의 동향이 확실하

39) 이 법조문은 칭기스칸의 작전기율을 강조하는 訓言으로 보인다. 대자사크의 법조문으로 포함해야 할 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연구참여자들의 토론 끝에 이를 ‘전쟁법’ 법조문에 넣기로 하였다. 참조, 武志忠主編, 앞의 책, 123면.

게 파악될 때까지는 공격하지 않았다. 이러한 신중성은 크고 작은 모든 부대에 준수되어 칭기스칸 군대가 막강해지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

또 놀라운 규율이 있다. 그것은 바로 參戰 병력은 지정된 집결지에 반드시 시간에 맞춰 도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자사크 제29조는 “참전자는 집결명령을 받을 시 반드시 시간에 맞춰 지정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지각하여서도 안되고 일찍 도착해서도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軍律은 상당한 수준의 작전능력이 있는 부대만이 가능한 것이었다. 몽골군대는 이러한 군율을 지키면서 고도의 작전능력이 있는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기동성이 갖춰진 군대는 지정된 지점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몽골군대는 놀라울 정도의 기동성이 있어서 위와 같은 작전규범을 지킬 수가 있었다. 빠른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軍馬의 힘을 빌려야 했다. 몽골말은 비록 체형이 작았지만 체질은 강인하고 주인에게 충직한 특성이 있다. 몽골인들은 이러한 말을 귀히 여겼다. 대자사크에는 “말의 머리와 눈 부위를 때리는 경우, 사형에 처한다”(제57조)는 규정을 둘 정도로 말을 아꼈다. 왜냐하면 말이야 말로 기동성을 제공하고, 말의 기동력이 곧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2) 내부분규 금지규정

칭기스칸의 몽골군대는 交戰할 경우, 전쟁에 몰입하도록 하였고 재물의 탈취를 금지하였다. 적군을 무찌른 후에도 버려진 물건들을 함부로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후에야 일괄적으로 분배하도록 하였다.(제30조) 전투 중에 재물의 탈취를 허용하지 않고, 전쟁이 완전히 끝난 후에야 전리품을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유지할 수 있었고, 전투력의 消失을 방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규범은 전투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戰場에서 戰友의 의복이나 병기를 땅에서 줍게 되면 돌려줘야 한다. 이것을 본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다.(제32조) 군대내에서는 극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한 일로도 다툼

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내부 紛糾는 전투력을 저하시킨다. 전투에 임하는 전투원 사이에 분규가 생기면 전쟁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특히 의복은 酷寒 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군수품이고, 兵士의 무기는 제2의 생명인 것이다. 따라서 전우 사이에 전투 필수품에 관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게는 사형이라는 최고형으로 다스렸던 것이다. 이렇게 규율함으로 해서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분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4. 백성의 의무규정

1) 참전의무와 전쟁물자 부담의무

칭기스칸 대자사크 제27조는 “만약 전쟁에 필요하다면 각 개인은 노소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전쟁에 임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칭기스칸 시대의 몽골인들은 어려서부터 각 부족끼리 패권을 다투는 전쟁을 보면서 자라난다. 전쟁에 지면 비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전쟁에 패배하여 모든 재산을 잃게 되고 처자식 등 가족이 몰살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인적 자원이 전쟁에 투입해야 한다는 認識이 널리 퍼져있었다. 이러한 몽골인들의 의식이 ‘칭기스칸 법전’의 한 개 조문으로 반영되었던 것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백성이 臨戰無退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전쟁에 임한다면 그 힘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게다가 대자사크는 모든 백성에게 평상시에 전쟁물자를 부담하도록 하였고, 이에 관한 징수와 징용은 십부장, 백부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出戰하기 전에 軍備를 검열해서 만약 준비가 부족하면 십부장, 백부장을 엄하게 처벌하였다.(제28조) 사회의 모든 자원을 한군데로 집중시키는 것 역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쟁물자를 부담할 의무를 지게 하였고, 또한 기층조직의 首長인 백부장, 십부장에 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임무를 부여하였으니 원활한 군수물자 공급체

계가 이루어졌을 것임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2) 남편 부재시 아내의 의무

대자사크에는 “남편이 바깥에서 전쟁에 참가하거나 수렵 시, 아내는 가사를 돌보며 남편을 대리하여 賦役의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⁴⁰⁾는 규정도 있다. 여기서 가리키는 ‘부역’이란 남편이 출정 시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戰馬, 무기, 밧줄 등을 포함해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軍糧과 식용 가축 등을 부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매 戶마다 일정한 수량을 비축하여 필요시 헌납해야 했다.⁴¹⁾ 남편이不在중일 때는 그 戶에서 분담해야 하는 노역도 아내가 부담해야 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參戰하던가 혹은 수렵에 나가 있을 때일지라도 부인은 가정을 돌보며 전략물자를 준비하고⁴²⁾ 필요한 일을 분담해야 했다. 한마디로 대몽골국의 인적자원을 포함한 모든 자원은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체제로 집중되었던 것이다.

3) 전사자 처리와 유가족 부양

戰場에서 죽은 戰死者들을 어떻게 취급하느냐도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중세 몽골사회에서는 전사자의 屍身을 중시하였다. 또 전사자 가족의 미래도 보장하도록 배려하였다. 대자사크에 “전사자를 보호한 자 혹은 노예가 전장에서 희생된 주인을 업고 나온 경우, 주인의 가축과 재산을 그 노예에게 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업고 나온 경우에는 죽은 자의 처, 노예와 모든 재산을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⁴³⁾는 규정이 있다. 전사자의 시신을 보존하여 유가족에게 넘기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의 생계도 보살필 수 있도록 고무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장에 나가있는 자가 가족의 생계에 관한 걱정없이 전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장에서 죽은 戰士의 시신을 존

40) 칭기스칸 대자사크 제33조.

41) 참조. 武志忠主編, 앞의 책, 127면.

42) 몽골여성들은 가죽옷, 신발, 각종 가죽제품 등을 縫製하고 비축한 식량을 잘 관리하는 한편 마굿간에 있는 말도 돌보는 등 유사시 전쟁에 동원될 군수물품들을 준비하며 또한 집안일을 돌봐야 했다.

43) 칭기스칸 대자사크 제34조.

엄하게 대하고, 전장에서 살아남은 전사가 죽은 戰友의 가족을 보살피게 되면 서로 마음 속 깊이 紐帶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유대감은 몽골민족을 더욱 단결하도록 작용되었을 것이다.

IV. 맺음말

‘칭기스칸 대자사’ 즉 ‘칭기스칸 법전’이 실존하지 않아 어떠한 체제로 어떠한 규범들을 담고 있었느냐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광범위한 지역에 있는 사료의 관련 기록들을 복원한 것을 통하여 대자사크가 어떠한지는 대체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칭기스칸 법전’은 고대 중국의 법전들과는 법형식이나 법전체제가 다르다 하는 점이다. 대자사크는 몽골사회의 요순, 관습법, 훈언, 명령, 법령 등을 法源으로 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독특한 유목문화의 특색이 있다. 또한 법규범을 통하여 전투력을 높이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실제적이고 실용적이었던 법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십진제 조직으로 사회를 편성하고, 그것을 전쟁시에는 손쉽게 군대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 각 급 首長들에게 분명한 임무를 부여하고 완수하지 못하면 처자식에게도 연좌처벌한 점, 간부들을 군사회의에 참석하도록 해서 上命下達의 지휘계통을 확립한 것, 수렵시에는 전시체제로 움직인 점, 수렵을 군사훈련화 해서 수렵이 사실상 군사훈련이 되도록 한 것, 표적집승을 놓친 책임자에 대하여 엄밀히 조사해서 과오의 경중에 따라 사형까지 시킬 수 있도록 한 점, 반드시 적의 동태를 파악한 후에 공격을 하도록 한 것, 지정된 집결지에는 정한 시간에 정확히 맞춰 도착하게 한 점, 남녀노소 모두에게 참전의무를 지우고 전쟁물자를 공급하도록 한 점 등등은 모두 몽골 군대의 전투력을 높이고, 전쟁수행 능력을 최대한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규범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칭기스칸 법전’이 있음으로 해서 아시아에는 농경문화를 기초로 하는 중화법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북부지

역에서 유목문화를 기초로 하는 몽골법계도 있었음을 상기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몽골제국 時期에는 몽골초원을 중심으로 東과 西 양방향으로 칭기스칸 법전이 전파되어 동쪽으로는 농경법문화에,⁴⁴⁾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슬람법문화 및 유럽법문화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칭기스칸 법전의 法典체제나 입법기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법규범이 실제적이고 실용적이어서 몽골제국을 막강하게 하였고, 결국은 거대한 영토를 정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44) 몽골제국이 아시아 고대 국가의 발전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Robert E. Bedeski, "Genghis Khan, Mongolia and the theory of human security", *China and Eurasia forum quarterly*, Vol.6, No.4(Nov-Dec, 2008), pp.81~102 참조.

[부록] 징기스칸 법전(Genghis Khan's Code of Laws)

징기스칸 법전

제1편 총칙

제1장 기본법

제1조 하늘은 징기스칸에게 자샤크(The Great Yasa, 법령)를 내려 주셨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제2조 한 민족이 만약 자녀가 부친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아우가 형의 권고를 듣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신임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지 않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칭찬하지 않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어른이 어린사람을 가르치지 않고 어린사람이 어른을 존중하지 않고, 관원(Nayan)이 그 친척만 믿고 낯선 사람을 멀리하며 부유한 자가 사유재물을 아끼고 공적인 재물에 손실을 끼친다면 반드시 적으로부터 공격당하여 패하고 집안이 몰락하고 국가가 멸망된다. 그러므로 징기스칸은 자샤크를 반포하여 모든 민중이 경계를 높이고 모든 관원(Nayan)과 평민(Halachu)들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長生天[天神]은 대업을 완수하도록 보호할 것이다. 자샤크는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천년, 만년 세대를 이어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제도

제3조 대몽골국은 汗位 계승자를 선거하고 斷事官(Zha'erhuchi)을 임명하고 전쟁을 발동하고 중대한 정책결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회의(Huliletai)제도를 실행한다. 회의(Huliletai)는 황금가족의 주요구성원, 萬戶長, 千戶長과 주요 관원(Nayan)으로 구성된다. 각 汗國은 汗位 및 중대한 정책결정을 하

는데도 이러한 규칙에 따라 진행한다.

제4조 ① 대몽골국은 단사관(Zha'erhuchi)제도를 실행한다. 회의를 통해 징기스칸은 쓰지후투후(Shijihutuhu, 사람이름)를 국가의 최고 단사관(Zha'erhuchi)으로 임명하며, 그 직책은 소송을 재판하고 靑冊의 제작과 分封을 기록하는 것이다.

② 단사관(Zha'erhuchi)은 판례를 징기스칸과 의논한 후 문서로 책을 만들어 보존하며 靑冊(Kuokuodiebutie'er)으로 명명한다. 후세들은 이를 고칠 수 없으며, 고치는 자는 처벌을 받는다.

제5조 대몽골국 아동은 반드시 위그르(Uighur)문자를 배워야 한다.

제6조 남자는 만 15세면 모두 병역을 치를 의무가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빈부와 귀천을 불구하고 모두 평등하게 노동한다.

제8조 ① 어떠한 종교신앙도 존중되며 어떠한 종교신앙도 특권을 누릴 수 없다.

② 어떤 사람이라도 종교를 신앙할 자유를 갖는다.

제3장 사회관리제도

제9조 사회조직은 10진제를 실행한다. 십호, 백호, 천호와 만호로 나누며 징기스칸은 만호장과 천호장을 임명하며, 천호장은 백호장을 임명하고 백호장은 십호장을 임명한다.

제10조 ① 호적제도를 수립한다. 각 개인은 모두 십호, 백호와 천호에 소속되며 노역을 담당한다.

② 각 개인은 지정된 십호, 백호, 천호 관할구역에서만 거주할 수 있으며 임의로 다른 단위로 옮겨 거주할 수 없으며 다른 곳으로 가서 보호를 구할 수도 없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길 경우, 이주지는 대중 앞에서 처형을 당하며 수용한 자도 엄중한 징벌을 받게된다.

제4장 役稅制度

제11조 민중은 賦稅, 노역과 驛役의 의무가 있다.

제12조 각 종파의 교주, 敎士는 부세 징수, 병역과 역역을 면제한다.

제13조 빈곤한 민중, 의사와 학문이 있는 자는 세수 징수를 면제한다.

제5장 役참제도

제14조 대몽골국은 驛站制度를 수립한다. 역참의 직책은 정보수집, 정보전달, 통상보장, 관원과 사절의 통행을 보장한다.

제15조 역참의 공급과 유지는 소재지 구역의 천호가 책임을 지며, 천호는 관할구역 내의 민중에게 역역을 분배한다.

제16조 역참을 책임지는 관원은 정기적으로 역전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며 매년 최소한 한 차례 한다.

제17조 역참에 순회하는 인원은 민중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제2편 各칙

제1장 군사법

제1절 수렵

제18조 대몽골국은 수렵을 기초로 하는 군사훈련제도를 수립한다.

제19조 수렵 시 전시조직에 따라 진행하며 지휘관을 확립하고 지휘관이 수렵을 일괄적으로 지휘한다.

제20조 야생동물이 달아나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응당 그 원인을 자세히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근거하여 책임 천부장, 백부장과 십부장에게 장형 혹은 사형에 처한다.

제21조 수렵을 마친 후 상처를 입거나 어리거나 암컷인 사냥감은 방생한다.

제2절 전쟁

제22조 양국이 교전 전에는 먼저 宣戰을 해야 한다. 적의 군민에게 “만약 순복한다면 선대와 안경을 얻을 것이며 만약 반항한다면 그 결과는 長生天 [天神]만이 알 뿐이며 우리 측에서 예측할 수 없다”고 선포해야 한다.

제23조 군대 편제는 십진제를 실행한다. 귀족, 노예를 포함하여 십부, 백부, 천부와 만부로 나눈다. 십인이 十夫長을 추천하고 십부장이 百夫長을 추천하고 백부장이 千夫長을 추천한다.

제24조 행군 할 때 군대를 시장하게 하지 않고 가축을 배고프게 하지 않도록 고려한 자만이 首長을 담당할 수 있다.

제25조 십부장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그의 직무를 철회하고 그의 처·자녀와 함께 처벌하며, 다른 십인 대열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십부장을 임명한다.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도 이와 같다.

제26조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은 매년 년초와 연말에 군사회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징기스칸의 訓言을 듣고 訓言의 실시를 보증하고 관할구역 軍士를 관리한다. 만약 겉으로는 순종하는 체하고 속으로 불복하여 大汗의 명령을 허사가 되게 하거나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직책을 철회한다.

제27조 만약 전쟁에 필요하다면 각 개인은 노소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전쟁에 임할 의무가 있다.

제28조 ① 민중은 전쟁 물자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십부장, 백부장이 책임지고 징수하고 징용한다.

② 출전 전에 軍備를 검열한다. 만약 준비가 부족하며 백부장, 십부장을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29조 참전인원은 집결명령을 받을 시 반드시 시간에 맞춰 지정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지각하여서도 안 되고 일찍 도착해도 안 된다.

제30조 ① 교전 시, 전쟁에 몰두해야하며 재물의 탈취는 금지한다.

② 적을 격파한 후에 폐기물을 보고 취해서는 안 되며 전쟁이 종결된 후에

일괄적으로 분배한다.

③ 전쟁 중에 만약 군마가 원래 진으로 후퇴하면 軍士는 몸을 돌이켜 온 힘을 다하여 싸워야 하며 몸을 되돌이키지 않을 경우 사형에 처한다.

제31조 軍士는 유사시에 신중하여야 하며 적군의 정황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경솔하게 적을 향해 출격할 수 없다.

제32조 전장에서 전우의 의복과 병기를 (땅에서)주었는데 반환을 거부한 경우 사형에 처한다.

제33조 남편이 바깥에서 전쟁에 참가하거나 수렵 시, 아내는 가사를 돌보며 남편을 대리하여 부역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34조 전사자를 보호한 자 혹은 노예가 전장에서 희생된 주인을 업고 나온 경우, 주인의 가축과 재산을 그 노예에게 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업고 나온 경우에는 죽은 자의 처, 노예와 모든 재산을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제3절 호위군

제35조 ① 호위군(Qiexue)제도를 수립하여 천호장, 백호장, 십호장과 백신인(자유민)의 자제 중에서 건장하고 능력 있는 자를 선발하여 호위군으로 삼는다.

②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고 자발적으로 호위군에 가입한 경우에는 어떠한 사람도 저지해서는 안 된다.

③ 호위군으로 징집된 천호장 자제는 측근(Naketitu) 10인과 아우(Diewu) 1인을 대동하고 백호장 자제는 측근(Naketitu) 5인과 아우(Diewu) 1인을 대동하며 십호장과 자유민 자제는 측근(Naketitu) 3인과 아우(Diewu) 1인을 대동할 수 있다.

④ 징집된 호위군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말, 물품을 준비한다. 자체적으로 준비가 부족할 경우 천호, 백호 내에서 나머지 부분을 조정 징집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어길 경우 엄격한 징벌을 가한다.

제36조 호위군의 지위는 외부에 있는 천호장 보다 높으며 외부에 있는 천호장과 호위군이 치고받고 싸울 경우 천호장을 엄격하게 징벌한다.

제37조 호위군의 측근(Naketitu)은 외부에 있는 백부장, 십호장 보다 높다. 외부에 있는 백부장, 십호장과 호위군의 측근(Naketitu)이 치고받고 싸울 경우 백호장, 십호장을 엄격하게 징벌한다.

제38조 ① 호위군이 관리제도를 위반할 경우 죽음을 면한다. 초범일 경우 鞭刑 3대에 처하고, 재범일 경우 편형 7대에 처한다. 세 번째 위반한 경우에는 편형 37대에 처하며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流刑에 처한다.

② 네명의 호위장이 상술한 벌칙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엄격한 징벌을 가한다.

징기스칸의 명령 없이 호위장 스스로 호위군을 처벌할 수 없으며 위반한 자는 그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가한다.

③ 호위장이 불복한 경우, 징기스칸에게 호소할 수 있으며 징기스칸이 최후의 결정을 내린다.

제39조 宿衛는 신성하여 침범할 수 없다. 어떠한 자도 숙위의 상좌에 앉을 수 없으며 숙위의 신체를 넘나들 수 없고 숙위를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체포한다.

제40조 ① 야간에 숙위의 허가 없이 大汗 한얼더위(Orduf Firbidden) 금지구역 부근에서 서성일 수 없고 한얼더위(Orduf Firbidden) 금지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위반한 경우, 숙위는 그를 구금하고 다음 날 심문을 한다.

② 급한 일로 보고할 경우 반드시 먼저 숙위의 허가를 받고 숙위와 함께 한얼더위(Orduf)에 들어간다.

③ 숙위의 수량을 탐문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할 경우, 숙위는 그가 타는 것을 몰수하고 그 옷을 벗긴다.

제41조 호위군은 징기스칸이 친히 지휘한다. 임의로 이동할 경우 엄격한 징벌을 가한다.

제2장 행위법

제42조 민중은 자국민을 대할 때는 온순하고 적을 대할 때는 악랄하여야

한다.

제43조 ① 3명 이상의 현인이 일관하게 인정하는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이다.

② 민중은 말을 신중하여야 한다. 한 마디를 하기 전에 모두 현인의 말에 비교하여야 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말도 현인의 말과 비교를 하여야 한다. 만약 적합하면 말하되 그렇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야 한다.

제44조 ① 술에 취한 자는 장님이 된다. 그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귀머거리이기도 하여 아무 것도 들리지 않는다. 병어리도 되어 그와 이야기를 하면 대답을 하지 못한다. 술에 취하면 죽은 자와 같아 똑바로 앉고자 하여도 할 수 없어 마비되어 멍하니 머리를 다친 사람과 같다. 술에 취하면 좋은 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용감함도 더하지 못하며 선행과 미덕이 생길 수도 없다. 술에 취할 때 사람들은 나쁜 일만 저지르고 살인하고 다툰다. 술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식, 기능을 잃게 하여 발전적 앞길에 장애와 사업상의 장애가 된다. 술 취한 자는 명확한 길을 잃고 식물과 식탁보를 불에 던져버리고 물속에 내동댕이친다.

② 술을 적게 마시는 자를 장려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 자를 중용한다.

군주로 술에 취하는 자는 대사를 주최할 수 없으며 교훈(Bilike)과 중요한 관습법을 반포할 수 없다.

③ 십부장, 백부장과 천부장이 술에 취한 경우 그 직무를 취소한다.

④ 호위군사가 술에 취한 경우는 엄격한 징벌에 처한다.

⑤ 하라추(Halachu)가 술에 취한 경우에는 그 전 재산을 몰수한다.

⑥ 만약 음주를 금할 수 없다면 한 사람이 매달 3번 실컷 마실 수 있다.

제45조 신탁자금으로 상업에 종사하여 누계 3차례 손실을 본 경우 사형에 처한다.

제46조 살인한 경우, 사형에 처한다.

제47조 남자와 여자가 공개적으로 간통하거나 혹은 붙잡힌 경우, 간통자는 사형에 병처한다.

제48조 남자 사이에 성교한 경우 사형에 병처한다.

제49조 도망한 노예를 수용하거나 재물을 주어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 사형에 처한다.

제50조 회피한 도술로 타인을 상해한 경우, 사형에 처한다.

제51조 결투 쌍방과 결투결과를 존중한다. 결투과정 중 어떠한 사람도 결투 중의 어느 한 쪽에 참여하거나 도와 줄 수 없으며 위반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52조 거짓말 한 경우, 사형에 처한다.

제53조 타인의 중요한 재물을 훔친 경우, 사형에 처하며 그의 처, 자녀와 모든 재산을 몰수한 후에 도둑맞은 자에게 준다.

제54조 타인의 중요하지 않은 재물을 훔친 경우, 장형에 처한다. 정황에 따라 각각 杖 7대, 17대, 27대, 37대, 47대, 107대까지 이른다.

제55조 주인은 노예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노예가 타인을 재물을 훔친 경우, 그 본인과 주인을 모두 사형에 처하며 그들의 처, 자녀와 재물을 몰수하여 도둑맞은 자에게 준다.

제56조 초원을 보호한다. 초원이 푸르른 후에 구멍을 파서 초원이 손상된 경우, 방화로 초원이 불탄 경우에는 진 가족에게 사형을 처한다.

제57조 ① 말들을 보호한다. 봄에 전쟁이 멈추자마자 곧 전마를 좋은 초장에 두고 승마를 하여서는 안 되고 말이 사방으로 뛰어 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

② 말의 머리와 눈 부위를 때리는 경우, 사형에 처한다.

제58조 水源을 보호한다. 하류에서 손을 씻으면 안 되며 물에다 방뇨해서는 안 된다.

제59조 ① 유산은 국유로 귀속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유산의 분배를 간여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死者의 상속자가 상속한다.

② 만약 사자가 상속자가 없을 경우, 유산은 그 제자 혹은 노예에게 준다.

제60조 처첩이 낳은 자녀는 모두 상속권이 있다.

제3장 소송법

제61조 집안의 일은 가능한 집안에서 해결하며 아외의 일은 가능한 아외에서 해결한다.

제62조 최고 단사관(Zha'erhuchi)이 소송을 재판할 때, 숙위로 숙위재판을 구성하여 단사관(Zha'erhuchi) 명령의 집행을 보장한다.

제63조 현장에 체포되거나 자신이 죄를 인정한 경우 외에 일반적으로 형벌을 처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고소를 당하고 그가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문의 방법으로 그 죄를 인정하게 한다.

부칙

제64조 황금가족의 구성원이 자샤크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가하여야 한다. 초범일 경우, 구두로 훈계하고 재범일 경우, 징기스칸의 빌리크(bilig, 訓言)에 따라 처벌한다. 세 번째 위반한 경우 먼 곳으로 유배한다. 유배한 후에 여전히 고치지 않은 경우에는 족쇄와 수갑을 채워 감옥에 가둔다. 만약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종친회의를 통해 처리결정을 내린다.

제65조 관원(Nayyan)들은 성실하게 자샤크를 전달해야 하며 전달의무가 있는데 전달하지 않은 경우, 엄격한 징벌을 가한다.

■ 참고문헌

- 르네 그루쎈(Rene Grousset)지음, 김호동 유원수 정재훈 옮김,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사계절출판사, 2003.
- 해럴드 램 지음, 강영규 옮김, 『칭기즈칸』, 현실과 미래, 1998.
- V.A.라자노프스키 지음, 서병국 옮김, 『몽골의 관습과 법(Fundamental Principles of Mongol Law)』, 도서출판 해안, 1996.
- Robert E. Bedeski, “Genghis Khan, Mongolia and the theory of human security”, *China and Eurasia forum quarterly* Vol.6, No.4(Nov-Dec, 2008).
- Denise Aigle, “The great jasaq of Gengis Khan, the empire, Mongol culture and Sharia”,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Vol.47, No.1(2004).
- Igor de Rachewiltz, “Some Reflections on Cinggis Qan’s Jasy”, *East Asian History* No.6(Institute of Advanced Studie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93).
- 郭 颖, 「论元朝法律对唐朝法律的反动」, 『青春岁月』, 2012.12.
- 奇格 著, 『古代蒙古法制史』, 遼寧民族出版社, 1999.
- 奇 格, 「试述古代蒙古的法制及其主要特点」, 『内蒙古社会科学』, 第2期, 1994.
- 赖秀兰, 「成吉思汗〈大扎撒〉中生态反探析」, 『安徽农业科学』, 36卷28期, 2008.
- 李玉年, 「〈大扎撒〉对元朝立法的影响及其在中华法系中的地位」, 『史林』, 2007.3.
- 武志忠主編, 『〈成吉思汗法典〉及原論』, 商務印書館, 內蒙古典章法學與社會學研究所, 2007.
- 柴 荣, 「论古代蒙古习惯法对元朝法律的影响」, 『內蒙古大学学报』第32卷第6期, 內蒙古大学, 2000.11.
- 阿茹罕, 「试论〈成吉思汗〉的刑法规定及其意义」, 『內蒙古农业大学学报』, 第6期第11卷, 总第48, 內蒙古农业大学, 2009.
- 吴海航, 「‘约孙’论-蒙古法渊源考之一」, 『中外法学』, 总第57期, 1998.
- , 「成吉思汗〈大扎撒〉探析」, 『法学研究』第5期, 1999.
- 王冬梅, 「〈成吉思汗法典〉与草原文化」, 『思想工作』第11-12期, 2007.
- 王福革, 「古代蒙古族法制思维方式研究」, 『內蒙古民族大学学报』第34卷第5期, 內蒙古民族大学, 2008.9.
- 王平原, 「“扎撒”、〈扎撒〉与〈大扎撒〉辨析」, 『山东警察学院学报』总第91期, 山东警察学院, 2007.1.
- 王红蕾, 「试论成吉思汗的法律思想」, 『西北史地』第1期, 1995.
- 牛文军, 「近年来蒙古民族地方法制史研究述评」, 『內蒙古大学学报』第32卷第5期, 內蒙古大学, 2000.9.
- 田莉姝, 「论元朝法制的民族特色」, 『贵州民族研究』第22卷 总第89期, 2002.
- 包朝鲁门, 「蒙古族古代独特刑罚制-罚畜刑研究」, 『硕士学位论文』, 內蒙古大学, 2012.5.
- 何天明, 「试论元朝的法制建设」, 『黑龙江民族丛刊』总第46期, 1996.
- 胡兴东, 「元代法律史研究几个重要问题评析」, 『內蒙古师范大学学报』第42卷第1期, 內蒙古师范大学, 2013.7.
- 黃華均 著, 『蒙古族草原法文化闡釋-衛拉特法典及衛拉特法的研究』,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6.
- 黃華均, 「蒙古族‘约孙’的生态价值诠释-基于低碳和绿色发展的法理思考」, 『新疆大学学报』第38卷第4期, 新疆大学, 2010.7.

<Abstract>

A Study on Genghis Khan's Code of Laws in the Middle Ages Mongolia.

Han, Sang Don*

In the late 12th century, Temugin has begun to unite the tribes in northeast Asia and, by the early 13th century, he has unified the region and came to power as Genghis Khan of the Mongol Empire. At that time, he promulgated the Genghis Khan's Code of Laws, also known as the Yassa, which was kept secret and no longer exists. Some of western scholars have collected the scattered articles of the laws and restored the Code. In 2007, the Genghis Khan's Code was reorganized by China with 65 articles of laws. In this article, the author analyses the provisions of the Code relating to the military affairs. The author further examines the reason why the Mongol Empire was able to conquer the world. The Mongolian traditional "yuson" and the customary law are the main source of the Genghis Khan's Code.

The military organization of the Mongol Empire was also a social organization. It was constructed with the ten-household, hundred-household, thousand-household and ten-thousand-household heads. The Great Mongolia adopted a military training system on the basis of hunting. During the hunting, it should be organized as in the battle, and the commander should be appointed to conduct the hunting unitedly. If a war requires, all people, no matter old

* Professor, Ajou University Law School

or young, rich or poor, should have the obligations to join the army and fight against enemies. Civilians were compulsory to bear goods materials of warfare. A wife should take good care of the household duties while her husband went to the war or went hunting, and bear the obligation of penal service instead of her husband.

Although the codification system and legislation technique of the Genghis Khan's Code were still far from perfection, the legal norm of the ancient Mongolian had realistic and practical characteristics. The related articles in the Genghis Khan's Code let the Mogol Empire to be a mighty country, finally they can conquer the huge territory.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 military-related provisions under the Code has strengthened the Mongol Empire, thereby providing the country with a driving force to conquer the large territory.

[Key Words] Mongol Empire, pastoral society, Genghis Khan, Code, Jasaq, yuson